

◦ 사업주용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기술지원 안내



01

안전보건개선계획 개요 및 필요성 01

0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주요 내용 02

- 참고1 사업장 준비 및 작성 시 참고서류 09
- 참고2 안전보건개선계획 업무처리 절차 10
 - 서식1 안전보건개선계획서(양식) 11
 - 서식2 안전보건컨설팅 신청서(양식) 23
- 참고3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 예시 24
- 참고4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 법령 36
- 참고5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서 37
- 참고6 5대 중대재해예방 12대 안전수칙 OPL 38
- 참고7 2026년 재정지원사업 안내 OPL 39

안전보건개선계획 개요 및 필요성

1 안전보건개선계획이란?

①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하는 제도로써

◆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원과 개선계획서 검토 및 이행을 확인하고 사업장 내 불안정한 시설 및 안전관리체제의 개선,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감소 및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의 필요성

① 최근 5년간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인 ▲ 동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및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또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에서 다음 연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② 이에 정부는 산업재해가 지속·다발하고 있는 고위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 설비·작업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고위험 사업장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추진합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사업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안전보건컨설팅’이라 함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개선계획 수립 대상으로 명령받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안전보건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컨설팅
※ 단,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비대상 및 안전보건관리 업무 비위탁 사업장에 한함

‘상시 근로자수’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 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수

‘적정성 최종 검토 및 승인’이라 함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진단 결과, 안전보건전문가 컨설팅 결과, 공단 안전보건컨설팅 내용 또는 사업장 자체에서 작성·수립한 개선계획서 내용 중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 사항의 누락 여부, 대책의 적절성, 개선기간의 타당성 및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등 제출된 개선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

‘개선계획 완료 확인’이라 함은

개선계획서 승인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계획서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 개선기한 후 이행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절차

2 개선계획 수립·시행 대상 선정

선정 기준

| 관련 근거 | 대상 사업장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1항 |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3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 ①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이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발부**



벌칙 | 명령을 위반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4항제4호)

-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안전보건진단
명령 대상 사업장

| 관련 근거 | 대상 사업장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4 개선계획 수립 지원(안전보건컨설팅)



공단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 ① **지원 대상**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 중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공단에 **안전보건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

※ 단,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비대상 또는 안전보건관리업무 비위탁 사업장에 한함

- ② 공단의 안전보건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서식2, p.23>를 활용하여 관할 일선 기관에 신청

- ③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하되 5대 중대재해예방 12대 핵심안전수칙** 포함

* 불안정한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 ①추락(보호구 착용,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망, 덮개 고정), ②부딪힘(출입금지·작업지휘자 배치, 통로확보 등)

③끼임(방호장치설치, LOTO), ④화재·폭발(불티 비산방지·화재감시자 배치, 소화설비·가연물 관리), ⑤질식(유해 가스 농도측정·환기, 호흡용 보호구 착용)

5 개선계획 수립 및 제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정·작업·설비의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노동자와 함께 고민하고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 기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 3부(가급적 PDF 파일 포함)를 제출

- 📌 **주의 사항**

- ◆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공단이 안내한 자료<서식1 및 참고3>를 참고하여 작성
- ◆ 안전보건개선계획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 ◆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전문가의 컨설팅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포함
- ◆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령 [별표9]에 따른 사업장



● **벌칙**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5항제1호)

- ◆ 유해·위험요인 개선 대책은 3E(공학적, 교육적, 관리적) 대책 순으로 수립
※ 단순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정리정돈 등 관리적 대책만을 개선대책으로 수립 지양

| 개선계획 수립 예시 | 문제점 | 개선 대책 |
|---------------|--|---|
| | 공장 내 높이가 3m 지점에 설치된 성형틀 (금형) 보관용 적재대의 단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천장크레인으로 적재·인양 시 출입하는 작업자의 추락위험 | (부적정 예) 작업자 보호구 지급·착용 철저 (적정 예) 단부에 미닫이 형태의 안전난간(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및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을 안전보건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작업 중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혹은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사용 |

◆ 개선 기한은 최대 6개월 이내로 하되 가급적 아래 기준 준수

| 안전보건개선계획 개선기한(권고) | 구 분 | 급박한 위험 | 일반 유해·위험 | 장기 설비 개선 |
|----------------------|-------|--------|----------|----------|
| | 개선 기한 | | 즉시 | 1개월 이내 |

※ 다만, 6개월을 초과하여 장기간이 소요될 만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 개별 개선 항목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

- ◆ 개선계획 제출기한은 수립명령 후 60일 이내이나 개선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가 있으므로 **가급적 수립명령을 받은 후 4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 요망
- ◆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포함한 벌칙을 받을 수 있음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고위험 설비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비개선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는 관할 일선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7 또는 홈페이지 clean.kosha.or.kr 참조>

6 개선계획 적정성 검토 및 승인



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요청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개선 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합니다.

- ④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며, 공단 일선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 공단 일선기관은 요청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 개선방법 및 개선기간 등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적정한 계획서는 적정의견, 부적정 계획서는 보완 의견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

검토 방법 사업장에서 제출한 개선계획에 따른 개선 항목을 공단이 개선 항목별로 개선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 ◆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판단한 경우,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개선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검토 주요 내용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등 수립 절차 준수 여부
- ◆ 공단의 안전보건컨설팅 시 지적사항, 안전보건진단 또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 안전보건전문가 컨설팅 내용 반영 여부
- ◆ 개선내용, 개선방법 및 소요경비 등 개선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 ◆ 5대 중대재해예방 12대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개선계획서 승인 및 보완

-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의 개선계획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후 개선 계획이 적정한 사업장에 대해 승인을 통보
- ◆ 개선계획서 적정성 심사결과 보완(조건부 적정 및 부적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자체 보완 또는 개선계획 재제출)토록 지방노동 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통보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판단을 받아 지방노동관서로부터 개선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장 • 개선계획에 따른 개선항목의 개선을 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조건부 적정 판단을 받아 지방노동관서로부터 개선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장 • 조건부 적정사항을 보완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 보완 개선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확인)를 거쳐 개선계획을 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정 판단을 받아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재제출을 명령받은 사업장 • 부적정 사항을 보완하여 개선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로 재제출 |

- 🕒 **제출기한(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계획서를 미제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계획서 제출 촉구할 수 있음**



• **벌칙 | 명령을 위반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4항제4호)**

7 개선계획 이행 완료 통보 및 확인



고용노동부 및 공단은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승인받은 사업장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 🔍 **확인 대상** 개선계획 적정으로 승인받은 사업장 중 **유해·위험요인 개선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



사업장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한 사업주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개선계획 완료 및 확인을 문서로 반드시 요청하여야 합니다.

- 🔍 **확인 방법** 사업장 개선계획에 따른 개선 이행 사항을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선 항목별로 확인**
 - 🔍 다만, 사업장에서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사항이 제출자료(사진 등)로 확인 가능하다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한 경우, 서류 확인으로 대체 가능
- 🔍 **확인 결과 판단** 지방노동관서 및 공단 일선기관은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 🔍 개선 항목이 모두 개선 완료된 경우 ‘종결’ 처리,
 - 🔍 개선계획 미이행한 사항에 대하여 미이행 사유가 **정당***할 경우 ‘개선기간 연장’ 가능
 - * 개선 사항이 장시간 소요되어 계획 개선기한보다 초과됨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안전검사 신청서, 계약서, 세금계약서 등)를 제시한 경우
 - 🔍 특별한 사정없이 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벌칙 |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15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5항제1호)

8 기타 문의사항

- 🔍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전 문의사항, 시설개선 시 궁금한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또는 **공단 일선기관 직원**과 협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및 연락처

| 연번 | 기관 | 부서명 | 관할 지역 | 대표 전화번호 |
|----|----------|------------------|--|--------------|
| 1 | 서울광역본부 | 서비스안전부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02-6711-2800 |
| 2 | 강원지역본부 | 안전보건부 |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 033-815-1004 |
| 3 | 서울남부지사 | 안전보건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02-6924-8700 |
| 4 | 서울동부지사 | 안전보건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 02-2086-8000 |
| 5 | 강원동부지사 | 안전건설부 |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033-820-2580 |
| 6 | 부산광역본부 | 산업안전부, 서비스안전부 | 부산광역시 | 051-520-0520 |
| 7 | 울산지역본부 | 산업안전부 | 울산광역시 | 052-226-0510 |
| 8 | 경남지역본부 | 산업안전1부 |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 055-269-0510 |
| 9 | 경남동부지사 | 산업안전부 |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055-371-7500 |
| 10 | 광주광역본부 | 산업안전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 062-949-8700 |
| 11 | 전북지역본부 | 산업안전부 |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 063-240-8500 |
| 12 | 전남지역본부 | 안전보건부 |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 061-288-8700 |
| 13 | 제주지역본부 | 안전보건부 | 제주특별자치도 | 064-797-7500 |
| 14 | 전북서부지사 | 안전보건부 |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 063-460-3600 |
| 15 | 전남동부지사 | 산업안전부 |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 061-689-4900 |
| 16 | 대구광역본부 | 산업안전부 |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 053-609-0500 |
| 17 | 경북지역본부 | 산업안전부 |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칠곡군 석적읍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 054-478-8000 |
| 18 | 대구서부지사 | 산업안전부 | 대구광역시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 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 053-650-6810 |
| 19 | 경북동부지사 | 산업안전부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 054-271-2016 |
| 20 | 인천광역본부 | 산업안전1부 | 인천광역시 | 032-510-0500 |
| 21 | 경기북부지사 | 산업안전부 |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 031-841-4900 |
| 22 | 고양파주지사 | 안전건설부 |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 031-995-6581 |
| 23 | 경기중부지사 | 산업안전부 |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 032-680-6500 |
| 24 | 대전세종광역본부 | 산업안전1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 042-620-5600 |
| 25 | 충북지역본부 | 안전보건부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 043-230-7111 |
| 26 | 충남지역본부 | 산업안전부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 041-570-3400 |
| 27 | 충북북부지사 | 안전보건부 |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 043-849-1000 |
| 28 | 경기광역본부 | 산업안전1부 |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 031-259-7149 |
| 29 | 경기서부지사 | 산업안전부 |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관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 031-481-7599 |
| 30 | 경기동부지사 | 안전보건부 |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 031-785-3300 |
| 31 | 경기남부지사 | 안전보건부 | 경기도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 031-690-1900 |



참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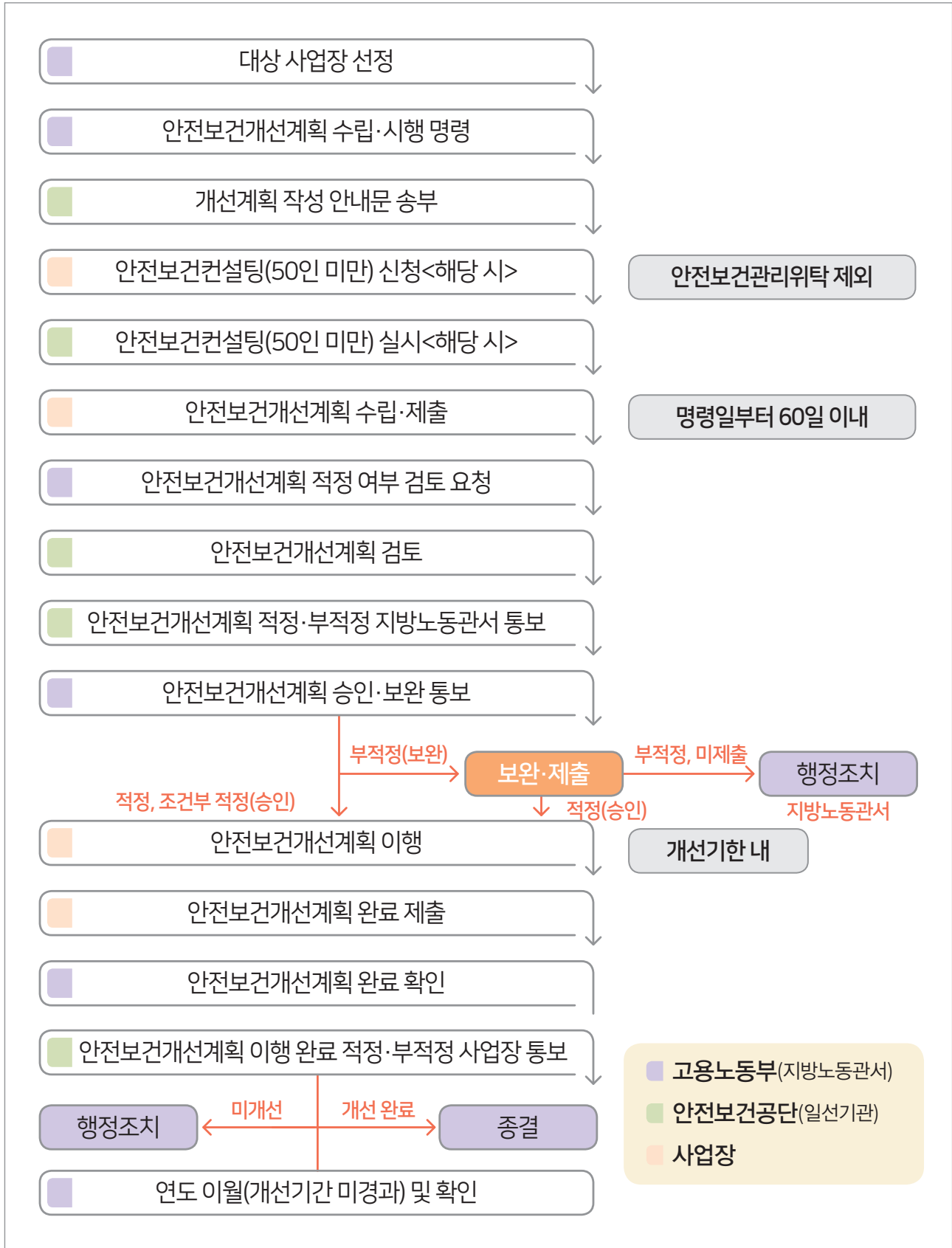
사업장 준비 및 작성 시 참고 서류 목록

- ① 산업재해기록 관련 서류(최근 3년간 산업재해조사표 등)
- ② 안전보건관계자 선임보고 관련 서류(해당 시)
- ③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서류
- ④ 안전보건관리 대행 관련 서류(해당 시, 대행계약서, 점검결과서 등)
-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서류(해당 시)
- ⑥ 안전보건관리규정(해당 시)
- ⑦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교육계획, 교육일지, 교육자료 등)
- ⑧ 사업장 Lay-Out 및 설비보유 현황표(특히, 유해·위험기계기구)
- ⑨ 유해·위험기계기구 검사 관련 서류(정기검사, 자체검사 등)
- ⑩ 보호구 지급 관련 서류(지급기준, 지급대장 등)
- ⑪ 유해물질 사용현황 목록(물질안전보건자료, 보유·사용 현황표 등)
- ⑫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
- ⑬ 건강진단 관련 서류
- ⑭ 위험성 평가 관련 서류
- ⑮ 노동부, 공단 등 외부기관 지도·감독 및 점검 관련 서류(최근 3년간)
- ⑯ 기타 안전보건 관련 서류(사업장 일반현황, 근로자 현황 등)



참고2

안전보건개선계획 업무처리 절차



2026년도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서

| | | | |
|---------|-----|-----------|---|
| 사업장명 | | 전화번호(fax) | |
| 소재지 | | 업종 | |
| 대표자명 | | 근로자수 | 명 |
| 사업주명 | (인) | 담당자명 | |
| 담당자 연락처 | | E-mail | @ |

1. 본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수립된 개선계획서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본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구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및 확인 |
|----|--|------------------|
| 일자 | . . . | . . . |
| 실시 |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근로자 대표 성명) (서명)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경우,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제출

3. 세부 개선계획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및 기타 시설,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4. 본 개선계획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참조하여 계획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기록,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지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 Lay-Out 및 설비 보유현황, 위험기계·설비 검사, 유해물질 사용현황,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실시 결과표 등

| 확인 | 명령일자 | 제출일자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컨설팅 시행 여부 | 승인 | |
|----|------|------|--|------|-------|
| | | | | 승인일자 | 근로감독관 |
| | | |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미 시행 | | (인) |

※ 승인(승인일자, 근로감독관)란은 사업장에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I. 사업장 현황

1.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최근 3년간)

가. 재해발생 현황

| 년도 | ① 근로자수 | 재해자수 | | | | | 재해율* (%) |
|------|-----------|------|------|------|------|---------------------|-------------|
| | | ②계 | 사고사망 | 사고부상 | 질병이환 | 질병사망 그 외 사고사망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재해율=(②재해자수 계/①근로자수)×100

나. 재해발생 분석

| 2023년 | | | | |
|-------|------|-----|------|---|
| 발생일자 | 재해자수 | 기인물 | 발생형태 | 비고 |
| / | | | | <input type="checkbox"/> 50세 이상 고령자(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명) <input type="checkbox"/> 여성(명) <input type="checkbox"/> 야간(명) <input type="checkbox"/> 교대근무(명) |
| / | | | | <input type="checkbox"/> 50세 이상 고령자(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명) <input type="checkbox"/> 여성(명) <input type="checkbox"/> 야간(명) <input type="checkbox"/> 교대근무(명) |

| 2024년 | | | | |
|-------|------|-----|------|---|
| 발생일자 | 재해자수 | 기인물 | 발생형태 | 비고 |
| / | | | | <input type="checkbox"/> 50세 이상 고령자(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명) <input type="checkbox"/> 여성(명) <input type="checkbox"/> 야간(명) <input type="checkbox"/> 교대근무(명) |
| / | | | | <input type="checkbox"/> 50세 이상 고령자(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명) <input type="checkbox"/> 여성(명) <input type="checkbox"/> 야간(명) <input type="checkbox"/> 교대근무(명) |

| 2025년 | | | | |
|-------|------|-----|------|---|
| 발생일자 | 재해자수 | 기인물 | 발생형태 | 비고 |
| / | | | | <input type="checkbox"/> 50세 이상 고령자(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명) <input type="checkbox"/> 여성(명) <input type="checkbox"/> 야간(명) <input type="checkbox"/> 교대근무(명) |
| / | | | | <input type="checkbox"/> 50세 이상 고령자(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명) <input type="checkbox"/> 여성(명) <input type="checkbox"/> 야간(명) <input type="checkbox"/> 교대근무(명) |

※ 야간: 22:00~06:00, 해당 항목에 후 재해자수 기재(예: 외국인(2명))

다. 연도별 산업재해 주요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 2023년 | | |
|-------|-------|----------|
| 연번 | 주요 원인 | 재발 방지 대책 |
| | | |
| | | |

| 2024년 | | |
|-------|-------|----------|
| 연번 | 주요 원인 | 재발 방지 대책 |
| | | |
| | | |

| 2025년 | | |
|-------|-------|----------|
| 연번 | 주요 원인 | 재발 방지 대책 |
| | | |
| | | |

※ 주요 원인은 4M(인적, 기계, 매체, 관리적)을 기반으로 분석, 재발 방지 대책은 3E(기술적, 교육적, 규제), 3-why 기법 등을 통해 근원적 원인 및 대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조치

2. 주요 생산·작업(제조)공정

| 공정명 | 공정흐름 | 근로 자수 | 유해·위험요인 | | 작업내용별 문 제 점 |
|-----|------|----------|---------|------|----------------|
| | | | 위험기계설비 | 유해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 개선계획

1. 요약

가. 산업재해 감소목표

재해감소율: (%)

재해자 감소: (명)

| 재 해 율 | 전년도 | 실시년도 |
|-------------|-----|------|
| | | |

| 재해 자수 | 전년도 | 실시년도 |
|----------|-----|------|
| | | |

나. 주요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 방안

| 공정 | 유해·위험요인 | 개선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총 소요금액 : (백만원)

라. 개선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소요기간 월)

2. 세부 개선계획

가. 안전보건규칙 일반분야

| | |
|-----------------------|-------------------------------|
| 1. 작업장 안전조치 | 6.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
| 2. 통로의 설치 | 7. 비계의 재료 및 구조, 설치, 점검 및 보수 등 |
| 3. 보호구 지급·착용 | 8. 환기장치의 적정설치 |
| 4. 관리감독자 직무, 사용의 제한 등 | 9. 휴게시설 등의 설치 |
| 5.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 10.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

| 연 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천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안전보건규칙 안전기준 분야(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 | |
|---|--|
| <p>1. 기계 등의 일반기준 안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의 제한,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기계의 동력 차단장치, 운전시작전 조치,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방지, 공장난 기계의 정비 등,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작업모의 착용, 장갑의 사용 금지, 작업 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볼트·너트의 풀림방지, 제한속도의 지정 등,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p>2. 공작기계, 프레스 및 전단기, 목재가공용기계, 원심기 및 분쇄기등, 고속회전체, 보일러 등, 사출성형기 등 안전조치</p> <p>3. (양중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안전조치</p> <p>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컨베이어 등 안전조치</p> <p>5. 산업용 로봇 안전조치</p> |
|---|--|

| 연 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천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안전보건규칙 안전기준 분야(중량물 취급 시,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 1. 중량물 취급 안전조치 2. 중량물의 구름 방지조치 | | 3. 화물취급 작업 등 안전조치 - 고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사용전 점검 등,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하적단의 간격,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화물의 적재 등 | | |
|-----------------------------------|-------------|---|--------------|-----|
| 연 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천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안전보건규칙 보건기준 분야(직업병 발생사업장에 한함)

| | |
|--|--|
| <p>1. 관리·허가대상·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의 성능, 작업방법, 명칭 등의 게시, 출입의 금지,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세척(세안)시설 등</p> <p>2.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 청력보호구의 지급,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시행, 진동 보호구의 지급, 유해성 등의 주지, 진동 기계·기구의 관리 등</p> <p>3.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 고열·한랭·다습장해 예방조치, 휴게시설의 설치, 출입의 금지, 세척시설,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등</p> | <p>4.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의 설치,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의 시행,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p> <p>5.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환기, 인원의 점검, 출입의 금지, 감시인의 배치, 안전대 등 보호구의 지급, 대피용 기구의 비치 등</p> <p>6.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p> |
|--|--|

| 연 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천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2_ 안전보건컨설팅 신청서(양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안전보건컨설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 ()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근로자수(명) | | |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input type="checkbox"/> 유 | <input type="checkbox"/> 무 |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일자 | 20 |
| 안전보건업무 위탁 여부 | <input type="checkbox"/> 여 | <input type="checkbox"/> 부 | | |
| 개선계획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안전보건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O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안전보건컨설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개선계획 담당자 성명,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안전보건컨설팅 업무처리 | 안전보건 컨설팅 실시 다음년도부터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지원 업무처리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안전보건컨설팅 모니터링 수행업체 | 안전보건컨설팅 모니터링 | 성명, 휴대전화번호 |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다음년도 부터 1년 |

※ 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모니터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안전보건개선계획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공지 사항

안전보건컨설팅 모니터링 및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 | | | | | |
|---------------|---|-----------------------------|---|--------------------------|---|----------------------------|
| 컨설팅 신청 신청인 | → | 컨설팅 일정 협의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 | 컨설팅 실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 | 컨설팅결과 송부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



참고3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 예시

2026년도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서

| | | | |
|------|---------------|-----------|----------------------------------|
| 사업장명 | ○○○공업 | 전화번호(fax) | 123-4567-8901 (123-4567-8902) |
| 소재지 | 서울 중구 ○○로 111 | E-mail | ****@naver.com |
| 대표자 | 홍길동 | 업종 | 금형제조업 |
| 사업주 | 홍길동 (인) | 근로자수 | 25명 |

- 본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수립된 개선계획서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구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 및 확인 |
|----|---|-----------------------|
| 일자 | . . . | 2026. 3. 25. |
| 실시 |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없음 | (근로자 대표 성명) 나 근로 (서명)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경우,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제출

- 세부 개선계획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및 기타 시설,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본 개선계획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참조하여 계획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기록,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지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 Lay-Out 및 설비 보유현황, 위험기계·설비 검사, 유해물질 사용현황,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실시 결과표 등

| 확인 | 명령일자 | 제출일자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컨설팅 시행 여부 | 승인 | |
|----|-------------|-------------|---|------|-------|
| | | | | 승인일자 | 근로감독관 |
| | '26. 3. 10. | '26. 3. 26.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미 시행 | | (인) |

I. 사업장 현황

1.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최근 3년간)

가. 재해발생 현황

| 년도 | ① 근로자수 | 재해자수 | | | | | | 재해율* (%) |
|------|-----------|------|------|------|------|------|-------------|-------------|
| | | ②계 | 사고사망 | 사고부상 | 질병이환 | 질병사망 | 그 외 사고사망 | |
| 2023 | 25 | 2 | 1 | 1 | - | - | - | 8.00 |
| 2024 | 25 | 1 | | 1 | - | - | - | 4.00 |
| 2025 | 25 | 1 | | 1 | - | - | - | 4.00 |

* 재해율=(②재해자수 계/①근로자수)×100

나. 재해발생 분석

| 2023년 | | | | |
|--------|------|-----|------|--|
| 발생일자 | 재해자수 | 기인물 | 발생형태 | 비고 |
| 4. 5. | 1 | 바닥 | 넘어짐 | <input checked="" type="checkbox"/> 50세 이상 고령자(1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명) <input type="checkbox"/> 여 성(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야 간(1명) <input type="checkbox"/> 교대근무(명) |
| 8. 31. | 1 | 지게차 | 부딪힘 | <input type="checkbox"/> 50세 이상 고령자(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성(1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야 간(1명) <input type="checkbox"/> 교대근무(명) |

| 2024년 | | | | |
|--------|------|-----|------|--|
| 발생일자 | 재해자수 | 기인물 | 발생형태 | 비고 |
| 6. 30. | 1 | 적재물 | 붕괴 | <input type="checkbox"/> 50세 이상 고령자(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성(1명) <input type="checkbox"/> 야 간(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대근무(1명)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50세 이상 고령자(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명) <input type="checkbox"/> 여 성(명) <input type="checkbox"/> 야 간(명) <input type="checkbox"/> 교대근무(명) |

| 2025년 | | | | |
|---------|------|-----|------|--|
| 발생일자 | 재해자수 | 기인물 | 발생형태 | 비고 |
| 11. 12. | 1 | 코일 | 고온접촉 | <input type="checkbox"/> 50세 이상 고령자(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국인(1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성(1명) <input type="checkbox"/> 야 간(명) <input type="checkbox"/> 교대근무(명) |
| | | | | <input type="checkbox"/> 50세 이상 고령자(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명) <input type="checkbox"/> 여 성(명) <input type="checkbox"/> 야 간(명) <input type="checkbox"/> 교대근무(명) |

※ 야간: 22:00~06:00, 해당 항목에 후 재해자수 기재(예: 외국인(2명))

다. 연도별 산업재해 주요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 2023년 | | |
|-------|---|---|
| 연번 | 주요 원인 | 재발 방지 대책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로주변 조도 미확보 ○ 야간작업에 따른 부주의 ○ 금형 적재장소에 이동 미실시(작업절차 생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조명 설치로 조도 확보 ○ 장년근로자 야간작업 최소화 ○ 작업절차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경고음 작동 불량 ○ 작업 전 지게차 점검 미실시 ○ 통로 구획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운행 시 경고음 및 경고등 작동토록 정비(운전자) 및 작업전 점검 실시(관리자) ○ 통로 구획 도색 및 작업자 통행로에 라바콘 추가 설치 |

| 2024년 | | |
|-------|---|--|
| 연번 | 주요 원인 | 재발 방지 대책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재방법 불량(통로 인근 다단적재) ○ 작업안전수칙에 적재방법 미기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안전수칙에 화물별 적재 높이 및 방법 추가 기재 및 교육 ○ 통로 주변 적재 시 계단식 적재 |
| | | |

| 2025년 | | |
|-------|--|--|
| 연번 | 주요 원인 | 재발 방지 대책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일 화상 위험성 미인식 ○ 생산된 고온의 코일 적재장소 작업자 출입통제 미흡(적재장소 접근금지조치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통제(적재장소에서 1m이상 울 설치 등) 실시 ○ 울 벽면에 고온위험 경고 표지 설치 및 교육 실시 |
| | | |

※ 주요 원인은 4M(인적, 기계, 매체, 관리적)을 기반으로 분석, 재발 방지 대책은 3E(기술적, 교육적, 규제), 3-why 기법 등을 통해 근원적 원인 및 대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조치

2. 주요 생산·작업(제조)공정

| 공정명 | 공정흐름 | 근로자수 | 유해·위험요인 | | 작업내용별 문제점 |
|------------|--|------|--|--|---|
| | | | 위험기계설비 | 유해요인 | |
| 자재 입고 | 변압기 생산에 필요한 절연지, 도체 외함 등을 하차해 창고 등에 보관하거나 작업장으로 운반 | 3 | 지게차 크레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운전자 시야 불량으로 인한 부딪힘 ○ 크레인 방호장치 불량에 의한 운반물 떨어짐, 부딪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노후화로 안전장치 기능불량, 유도자 미배치 등 ○ 크레인 혹 해지장치 미부착 |
| 권선 가공 | 권선기를 이용해 절연체로 피복된 알루미늄 또는 구리 도체를 재단한 절연지와 함께 감는 과정 | 3 | 절단기 반자동·자동권선기 크레인 컨베이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인으로 코일 인양시 끼임 ○ 코일의 컨베이어 이탈로 맞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인·권선기 작업구역 내 출입금지 미조치 ○ 운반구 측면 이탈방지 조치 불량 |
| 철심 | 코일을 절단해 쌓거나 감아서 철심 형상으로 성형한 후 열처리로를 사용하여 소둔 처리 | 3 | 철심절단기 철심권선기 열처리로 지게차 크레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인으로 운반 시 근로자 부딪힘 ○ 냉각 중인 고온 제품접촉 화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계획서 미작성·미교육 ○ 위험구역 내 출입금지 미표시 |
| 중신 조립 | 철심과 권선을 조립해 권선 단락 유무 등을 검사 | 4 | 중신 조립설비 호이스트 지게차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작업자 부딪힘 ○ 호이스트 달기구 이탈로 맞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운행경로 출입금지 미조치 ○ 혹해지장치 작동불량 |
| 건조 | 건조로에 중신 조립품을 적재해 건조 | 3 | 크레인 이동대차 건조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 중 내부 진입 시 화상 ○ 크레인으로 조립품 운반시 끼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로 도어 시간장치 불량 ○ 작업구역내 출입금지 미조치 |
| 완성 조립 및 검사 | 변압기 외함에 중신 조립품 장입해 완제품을 생산하고 외관·구조, 내전압 등을 시험 | 3 | 절연유 공급설비 진공펌프 지게차 내전압시험기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운반 중 부딪힘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누전에 의한 감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통로 구분 미도색 및 유도자 미배치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누전차단기 미부착 |
| 제품 출하 | 변압기를 화물자동차에 상차하여 출하 | 2 | 지게차 크레인 이동대차 화물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인, 지게차 이용 출고작업 시 중량물 떨어짐, 부딪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미교육, 이동경로 출입금지 미조치 등 |

II. 개선계획

1. 요약

가. 산업재해 감소목표

재해감소율: 100(%)

재해자 감소: 1(명)

| 재해율 | 전년도 | 실시년도 |
|-----|-----|------|
| | 4.0 | 0.0 |

| 재해자수 | 전년도 | 실시년도 |
|------|-----|------|
| | 1 | 0 |

나. 주요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 방법

| 공정 | 유해·위험요인 | 개선 방법 |
|----------|-----------------|---------------------|
| <입고, 출고> | 지게차 | 안전장치 보수, 유도자 배치 |
| <권선 가공> | 컨베이어 | 운반구 측면 이탈방지조치 |
| <철심> | 절단기, 코일 | 베임 방지용 장갑 지급 및 착용 |
| <중신 조립> | 이동식 기계·기구 전선 열화 | 기계·기구 신규 교체 |
| <건조> | 건조로 | 도어 시건장치 부착, 외함 접지 등 |
| <검사> | 내전압시험기 | 작업절차 개선 및 경고표지 부착 등 |

다. 총 소요금액: 30(백만원)

라. 개선기간: 2026년 3월 ~ 2026년 5월(총소요기간 2월)

가. 안전보건규칙 일반분야

| | |
|------------------------|--------------------------------|
| 8. 작업장 안전조치 | 13.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
| 9. 통로의 설치 | 14. 비계의 재료 및 구조, 설치, 점검 및 보수 등 |
| 10. 보호구 지급·착용 | 8. 환기장치의 적정설치 |
| 11. 관리감독자 직무, 사용의 제한 등 | 9. 휴게시설 등의 설치 |
| 12.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 10.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

| 연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 비고 |
|-----|--|-------------|------|----|
| 가-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실태) 야적장에 4단으로 적재된 화물(포대)이 안전 통로 인근하여 적재된 상태이고, 안전통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붕괴로 인한 근로자 재해위험이 있음 ※ 수입물량 증가, 출고 지연으로 야적장 부족 (개선 대책) 포대화물은 붕괴 위험이 없도록 2단으로 적재하되 붕괴하여도 안전통로를 이용하는 근로자 등이 재해를 입지 않도록 포대의 높이 이상의 거리를 안전통로와 이격하여 적재 | 2026. 4.31. | - | |

나. 안전보건규칙 안전기준 분야(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 |
|--|--|
| 1. 기계 등의 일반기준 안전조치 | 2. 공작기계, 프레스 및 전단기, 목재가공용기계, 원심기 및 분쇄기 등, 고속회전체, 보일러 등, 시출성형기 등 안전조치 |
| - 탑승의 제한,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운전시작전 조치,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방지, 공장난 기계의 정비 등,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작업모의 착용, 장갑의 사용 금지, 작업 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볼트·너트의 풀림방지, 제한속도의 지정 등, 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 | 3. (양중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안전조치 |
| | 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컨베이어 등 안전조치 |
| | 5. 산업용 로봇 안전조치 |

| 연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 비고 |
|-----|---|-------------|-------|----|
| 나-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실태) 전단기에 설치되어 있는 손접촉 방호울과 작업대 사이의 간격이 넓어 소재절단 작업시 전단날에 손협착 위험이 있음. ※ 방호울 설치 간격을 현장작업자가 알지 못함 | 2026. 3.31. | 200만원 | |
| 나-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 대책) 현재 전단기내 설치된 손접촉방호울은 설치 높이가 조정가능한 구조로 개선하고, 절단작업시 전단날에 손협착 위험이 없도록 방호울 하단과 송급소재 상면과의 간격은 항상 8mm이내가 유지되도록 조정하여 사용 (현 실태) 철판 Cutting용 전단기(1대)에 설치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공장 ○-line내> ※ 관리감독자가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안전의식 부족) (개선 대책) 기 설치된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손 협착 위험을 예방하는 방호장치로서 제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조치, 불량 시 교체 | 2026. 3.31. | 300만원 | |

다. 안전보건규칙 안전기준 분야(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1. 위험물 등의 취급 등 안전조치 | | 5. 건조설비 안전조치 | | |
|---------------------|---|-------------------------------|-------|----|
| 2. 화기등의 관리 | | 6.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조치 | | |
| 3.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 | 7.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 |
| 4.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안전조치 | | | | |
| 연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 비고 |
| 다-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실태) LP가스저장실에 설치된 LP가스검지기가 오작동되고 있어 LP가스 누출시 즉각적인 조치의 지연으로 인해 LP가스가 다량 누출됨으로써 위험성분위기를 형성, 점화원에 의한 화재·폭발의 발생위험성이 있음 ※ 가스누출 점검을 위한 장비 없음(안전관리비 미계상) (개선 대책) LP가스저장실의 가스검지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여 가스검지기 기능이 항상 유지토록 함으로써 LP가스 누출시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 | 2026. 3.31. | 100만원 | |
| 다-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실태) 산소 및 LPG취급용 호스가 노후화되어 있고 조연성 가스인 산소와 가연성가스인 LP가스 취급시 체결호스 파손으로 인해 화재 또는 화상의 발생위험이 있음 ※ 실적악화로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미반영됨 (개선 대책) 산소 및 LPG취급용 호스중 노후된 호스는 교체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체결호스 파손으로 인한 화재 또는 화상재해를 예방 | 2026. 4.31. | 300만원 | |

라. 안전보건규칙 안전기준 분야(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 1. 전기·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 | 3.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 | |
|--|---|---|-------|----|
| - 충전부 방호, 접지, 적정설치,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과전류 차단장치, 교류아크 용접기 안전조치 등 | | - 전기작업자의 제한,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절연보호호구 등의 사용 등 | | |
| 2.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 | 4.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 | |
| - 배선 등의 절연피복,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금지, 꽃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의 준수사항,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작업 안전조치 등 | | -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피뢰설비의 설치, 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등 | | |
| 연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 비고 |
| 라-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실태) 교류 ARC 용접기 접속부 및 홀더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우려 <R6 스탠드(1), 조관라인내(1)> ※ 원청의 비용절감으로 협력사의 요청이 묵살됨 (개선 대책) ARC 용접기 1·2차 접속단자(터미널)에는 충전부 접속 감전 위험이 없도록 방호·밀폐 등 절연처리하며 파손된 Holder는 즉시 교체. | 2026. 3.31. | 50만원 | |
| 라-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실태) 폭발위험지역내 방폭형 구동모타의 전선 인입구가 노출되어 있어, 위험물 누출시 점화원을 제공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작업전 점검 미실시(점검표에 점검대상 누락) (개선 대책) 방폭형 구동모타의 전선 인입구는 공기 유입이 불가능하도록 Sealing 처리하여 방폭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 2026. 3.31. | 100만원 | |

마. 안전보건규칙 안전기준 분야(중량물 취급 시,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 1. 중량물 취급 안전조치 | | 3. 화물취급 작업 등 안전조치 | | |
|-----------------|---|--|------|----|
| 2. 중량물의 구름 방지조치 | | - 고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사용전 점검 등,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하적단의 간격,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화물의 적재 등 | | |
| 연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 비고 |
| 마-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실태) 아적장에 적재한 코일(20톤)이 경사면에 적재되어 있음에도 구름방지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작업자 또는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충돌할 위험이 있음 ※ 구름 위험성 미인식(교육 부족) ○ (개선 대책) 구름명출대, 썰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예방, 중량물이 구름 위험이 있는 방향 앞에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출입금지 펜스 설치) | 2026. 4.31. | 50만원 | |

바. 안전보건규칙 보건기준 분야(직업병 발생사업장에 한함)

| 1. 관리·허가대상·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 4.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 | |
|--|---|---|-------|----|
| -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의 성능, 작업방법, 명칭 등의 게시, 출입의 금지,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세척(세안)시설 등 | | -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의 설치,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의 시행,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 | |
| 2.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 | 5.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 |
| - 청력보호구의 지급,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시행, 진동 보호구의 지급, 유해성 등의 주지, 진동 기계기구의 관리 등 | |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환기, 인원의 점검, 출입의 금지, 감시인의 배치, 안전대 등 보호구의 지급, 대피용 기구의 비치 등 | | |
| 3.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 | 6.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 | | |
| - 고열·한랭·다습장해 예방조치, 휴게시설의 설치, 출입의 금지, 세척시설,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등 | | | | |
| 연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 비고 |
| 바-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실태) 현장 도색용 페인트, 신너등 불필요한 위험물이 현장내 방치되어 있어 인근 화기취급 부주의시 화재, 폭발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음 ※ 인화성물질의 위험성 미인식(교육 미실시) ○ (개선 대책) 페인트, 신너 용기는 필요량만 현장에 비치, 사용하고, 불필요한 용기는 별도로 마련된 페인트, 신너 보관장소에 보관, 현장 사용 시에는 용기가 개방상태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 | 2026. 3.31. | 300만원 | |
| 바-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실태) 용접공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흠이 1,624~6,001mg/m³로 일부작업자위치에서 노출기준 5mg/m³을 초과하고 있음. ※ 흠의 위험성 미인식(교육 미실시) ○ (개선 대책) 용접공정에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비치, 작업시 가동시키고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 조치 | 2026. 3.31. | 200만원 | |

사. 안전보건관리(산업안전보건법)

|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관리상태 | | | | |
|-----------------------|--|-------------|-------|----|
| 연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 비고 |
| 사-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실태) 당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중소기업 모사업장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법 제25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나 미제정되었음 <li style="color: red;">※ 산안법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부족 ○ (개선 대책)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시 또는 비치, 규정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칙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보건관리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보칙 | 2026. 3.31. | 100만원 | |

| 2.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및 직무수행상태 | | | | |
|------------------------|---|-------------|------|----|
| 연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 비고 |
| 사-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실태) 공정별로 각 생산 라인별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가 임명은 되었으나 당해 작업내용과 관련한 안전보건활동내용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li style="color: red;">※ 안전중심의 관리감독자 역할 인식 부족(교육 미실시) ○ (개선 대책) 각 생산라인별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에게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2026. 3.31. | 50만원 | |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 | | | |
|-----------------------|--|-------------|-------|----|
| 연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 비고 |
| 사-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실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로 같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미선임 및 근로자 복지위주의 노사협의회로만 운영되고 있음 ※ 산보위의 역할에 대한 사업주, 노동자 인식 부족 ○ (개선 대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의 사용자 위원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 근로자측 위원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포함, 위원구성 변경시에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동수로 구성 운영 ○ (개선 대책)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노사협의회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반드시 참석 회의결과를 사내방송, 사내게시판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 | 2026. 3.31. | 100만원 | |

| 4.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및 교재 | | | | |
|--------------------|--|-------------|------|----------|
| 연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 비고 |
| 사-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실태) 생산직 근로자(대상 00명)에 대한 교육실시 미흡(00명 교육 미실시) ※ 생산품 납기일 부족으로 미실시(생산 중심의 경영) ○ (개선 대책) 정기적 교육계획수립 및 시행 법정교육시간 준수 (사무직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생산직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 | 2026. 3.31. | - | |
| 사-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실태) 관리감독자(대상 00명)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 ※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교육 의무 미인식 ○ (개선 대책) 교육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 시간 : 16시간 이상 - 자체교육이 어려울시 외부교육 이수 | 2026. 4.31. | 50만원 | 외부교육 수수료 |

| 5. 재해분석·대책수립 및 위험성 평가 | | | | |
|-----------------------|--|----------------|-------|----|
| 연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 비고 |
| 사-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실태) 재해발생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미흡으로 동종 유사재해발생이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 평가(최초, 정기, 수시)를 미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을 알지 못함 ○ (개선 대책) 재해발생 시, 보다 철저한 원인분석·대책수립 및 시행을 통해 동종유사 재해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 정기 교육시 재해 실사례 교육을 통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 2026. 3.31. | 100만원 | |

| 6. 보호구, 안전장치의 안전인증제품 사용 | | | | |
|-------------------------|--|----------------|-------|----|
| 연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 비고 |
| 사-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실태) 전 생산공정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모 착용시 턱끈 미사용으로 중량물 낙하, 비레 또는 근로자 전도 시 안전모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머리부상 등 재해위험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직(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관리 미흡 ○ (개선 대책)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감독자 현장 출입 시 모범이 되도록 하고, 안전모 착용 시 안전모 턱끈 사용이 철저히 되도록 관리. | 2026. 3.31. | 300만원 | |
| 사-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실태) ○○공정 ○○운전자(○명)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므로 중량물 운반시 충돌에 의한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착용이 작업에 불편하여 작업모를 착용 ○ (개선 대책) ○○운전자에 안전모를 지급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추후 현장 관리·감독강화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및 자발적인 보호구 착용작업이 되도록 조치 | 2026. 3.31. | 200만원 | |

| 7. 안전보건표지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게시 | | | | |
|--------------------------|---|----------------|-------|----|
| 연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 비고 |
| 사-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실태) 대형 입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안전”에 대한 입간판이 전무한 상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안법상 안전보건표지의 부착의무를 알지 못함(인식 부족) ○ (개선 대책) 근로자의 안전의식전환과 동기부여를 위한 안전보건표시를 회사 곳곳에 게시·부착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 | 2026. 3.31. | 100만원 | |

8. 작업장 통로 및 정리 정돈 상태

| 연번 | 현 실태 및 개선대책 | 개선기한 | 소요예산 | 비고 |
|------|---|-------------|-------|----|
| 사-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실태) 소형환봉 가공공장의 좁은 작업공간에 중간사상 완료제품이 불안정하게 높게 적재되어 있어 적재물 붕괴 또는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재해위험이 있음 ※ 야적공간 부족(출고 지연) ○ (개선 대책) 중간 사상완료 제품은 별도로 적재공간을 확보하여 적정높이의 적재가 되도록 하거나, 현위치에 적재 필요시에는 환봉 적치대 설치를 통해 안정된 적재 | 2026. 3.31. | 300만원 | |
| 사-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실태) 유압작동유가 안전통로상에 방치되어 있어 근로자 통행시 불안정한 행동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 ※ 별도의 적치장소가 없음 ○ (개선 대책) 유압작동유는 별도 적재장소에 구분 적재 되도록 하는 등 정기적인 작업장내 정리정돈을 통해 안전통로 및 안전작업공간 확보 | 2026. 3.31. | 100만원 | |



참고4 |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 <p>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p> <p>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p>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p>③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p> | <p>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p>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p> | <p>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p> <p>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p> <p>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p> |



참고5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2. 26.>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시행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하니 구체적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년 월 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라며, 재해율이 감소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개선항목 |
|---------|------|
| 일반사항 | |
| 중점 개선사항 | |
| 그 밖의 사항 | |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안내 사항

-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5대 중대재해 + 폭염대비

12대 핵심 안전수칙

추락

1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추락

2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추락

3
개구부 덮개 고정 설치

부딪힘

4
작업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작업지휘자 배치

부딪힘

5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및 작업장 정리 정돈

끼임

6
방호덮개, 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설치

끼임

7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등
잠금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화재·폭발

8
용접 시 불티 비산방지 철저 및
화재감시자 배치

화재·폭발

9
소화설비 및 가연물 관리 철저

질식

10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측정 및
작업 중 적정공기 유지(환기)

질식

11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폭염

12
5대 기본 수칙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



'26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금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저리 조건의 용자금 지원(고정금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2 지원대상

-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지원제외 대상

| | |
|---|--|
|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 '26년 용자금 지원 결정 후 전채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용자금 재신청 결정 불가 |
| ✓ 용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ims.go.kr)에서 지원합계 확인 | ✓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신청-결정 사업장은 용자금 지원 결정 불가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용자금 지원 결정 가능 |

3 지원금액 및 절차

- ✓ 지원금액 :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15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 전액 지원
- ✓ 지원절차



4 신청기간 및 방법

- ✓ 기간 : '26년 1월~재원 소진 시까지(5,386억원)
- ✓ 방법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 매뉴얼



5 지원품목

- ✓ 위험기계기구(부속품 포함)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
- ✓ 기술사업(진단·점검·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비용
 - 고용노동부 점검·감독, 공단 및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보수

6 필수사항

- ✓ 사업주교육 이수증 제출('23~'26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비대면포함), 위험성평가, 산재예방요율제 중 택1
- ✓ 기술지도 보고서 제출('25~'26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민간기술지도 등



지원품목 확인하기

2026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내



“중소사업장의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사고사망을 예방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01 지원조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 1. 뿌리공정 보유사업장* | 2.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3. 상생협약 체결사업장 | 4.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사업장 |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 주조 ▶ 소성가공 ▶ 표면처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 중, ▶ 한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229) ▶ 식품제조업(200) ▶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 ▶ 금속제련업(219)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중, ▶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282) |

* 뿌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활용기술이 주조, 소성, 표면처리로 표기된 사업장 |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안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적용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 1. 원청 직접지원 | 2. 상생관련금 연계 지원 | 3. 공단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의 원청으로부터 직접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 공단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02 지원금액 및 절차

지원금액

| 구분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
| 지급비율 (지급한도) | (정부) 공단 판단금액의 50% (1억원 한도) | (정부) 공단 판단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원청) 소요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

※ 자부담 비용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신청가능(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결정 후 신청한 경우에 한함)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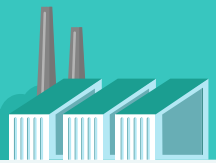


03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6.2.13 ~ 재원 소진 시까지('26년 재원 3,320억원)
- 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불가)



'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점검·감독,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도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지원대상

-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50인 미만 중소기업장(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 지원제외 대상 | | |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업장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보조 지원 결정을 받은 자 | ✓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결정 사업장 |
| ✓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 사업장 제외) | | |

3 지원금액 및 절차

- ✓ 지원금액 :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당해연도 1회 지원)
- ✓ 지원절차



※ 신속지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투자계획확인, 지급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절차 생략 가능

4 신청기간 및 방법

- ✓ 기간 : '26. 1. 2. (금) ~ 자원 소진 시까지('26년 자원 272.4억원)
- ✓ 방법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 매뉴얼



5 지원품목

- ✓ 지정품목 :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33종)
- ✓ 자율신청품목 : 지정·관리품목 외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한 사고 예방 기능·성능이 확인된 품목
(※ 현장확인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지원품목 확인하기

'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안내



1 사업개요

- 고용노동부 점검·감독,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 사항 중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투자계획확인, 지급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절차 생략 가능

2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소규모 특화: 1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40001~9) 제외) 중 당해 연도 고용노동부 점검·감독, 공단 기술지도, 민간위탁사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협·단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및 체계구축 컨설팅(위탁) 수행 결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
 - 50인 미만 중소기업장(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지원제외 대상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보조 지원 결정을 받은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

3 지원금액 및 절차

- 지원금액: 최대3,000만원(당해연도 기술지원 사업별 1회 지원)
- 지원비율: 위험요인 개선 소요·판단금액의 70~90% 지원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70%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80%
 -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90%

지원절차



4 지원품목

- 지원품목: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즉시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술지도 수행직원이 지적한 설비
※ 위험설비 지원은 비인종품 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검사 대상) 교체 또는 안전검사 불합격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제외품목: 전동지게차 등 관리품목, 소모품 성격의 품목(보호구 등, 단 별목작업 보호구는 가능)



지원품목 확인하기

'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란?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보건장비 등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50인 미만 중소기업장(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

지원제외 대상

- | | | |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업장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보조 지원 결정을 받은 자 | ✓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결정 사업장 |

✓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 사업장 제외)

3 지원금액 및 절차

- 지원금액 :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 지원절차



※ 신속지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투자계획확인, 지급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절차 생략 가능

4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 '26. 1. 2.(금) ~ 자원 소진 시까지('26년 자원 370억원)
- 방법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매뉴얼

산업안전포털
(portal.kosha.or.kr)

지원사업 신청

안전일터 조성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료실
문의 : 1544-3088

5 지원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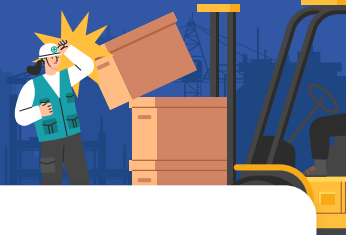
- 지정품목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등 35종
- 관리품목 : 공단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자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고정식),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자율신청품목 : 지정·관리품목 외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한 사고 예방 기능·성능이 확인된 품목



지원품목 확인하기

'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특화 지원 (끼임·부딪힘) 안내



1 사업개요

- 10인 미만 사업장의 재래형 재해인 끼임·부딪힘 사고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설비 비용을 지원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 | | |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업장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보조 지원 결정을 받은 자 | ✓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결정 사업장 |

✓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 사업장 제외)

3 지원금액 및 절차

- 지원금액 :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최대90%), 당해연도 1회 지원)

- 지원절차



※ 신속지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투자계획확인, 지급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절차 생략 가능

4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 '26. 2. 9.(월) ~ 재원 소진 시까지('26년 재원 334억원*) ※ 끼임 287억원, 부딪힘 47억원
- 방법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산업안전포털
(portal.kosha.or.kr)

지원사업 신청

소규모 특화 지원사업

자료실
문의 1544-3088

5 지원품목(QR참고)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 등 끼임 재해예방품목 15종
- 화물자동차 충돌예방장치 등 부딪힘 재해예방품목 18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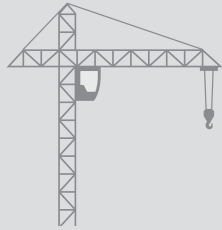


지원품목 확인하기

자료내용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업무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이므로 업무상 이의제기 등
소명자료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기술지원 안내

| | |
|-----|------------------|
| 발행일 | 2026년 2월 발행 |
| 발행인 | 김현중 |
|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
| 전 화 | (052)703-0634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기술지원 안내

